

보 건 복 지 부

시 정 요 구

제 목 사설 장사시설 관리 부적정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원주시, 삼척시, 횡성군, 영월군, 정선군, 철원군, 화천군, 인제군,
고성군

내 용
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법인묘지, 사설화장시설, 사설봉안시설, 사설자연장지의 설치·조성자 또는 관리인 및 장례식장영업자는 반기별로 매장, 화장, 봉안, 자연장 또는 장례식장의 관리·운영상황을 매 반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 관할 시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(2015년 하반기 보고는 1월31일까지 가능¹⁹¹⁾)

그런데 2014년 이후 강원도 내 사설 장사시설의 운영 상황을 확인한 결과, 26개의 시설(법인묘지 3, 사설봉안시설 5, 장례식장 17, 자연장지 1)에서 1회 이상 운영상황 보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초과하여 보고하였다.

또한,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법인묘지, 사설화장시설, 사설봉안시설, 사설자연장지의 설치·조성자 또는 관리자는 법인묘지·사설화장시설·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관할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그런데 2014년 이후 강원도 내 사설 장사시설의 운영 상황을 확인한 결과, ○○○(종교단체)단체,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 ○○○○(종교단체)체 등 2개의 시설

191)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(2015. 7. 20)

(사설봉안시설)에서 사용료/관리비를 신고하지 않았다.

조치할 사항 원주시장, 삼척시장, 횡성군수, 영월군수, 정선군수, 철원
군수, 화천군수, 인제군수, 고성군수

상황보고 미실시 등 법령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혹은 같은 법 제31조, 제32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, 제22조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를 하시고,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